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간의 업무협력 약정

해외건설협회(이하 "ICAK"라고 한다)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은 (이하 함께 지칭될 경우 "양 기관"이라 한다) '해외건설촉진법'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해외건설 정보의 수집, 분석 및 보급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수행과 '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'에 따라 기술원이 실시하는 환경산업 수출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협약은 정부의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환경 건설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내용 및 범위)

양 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,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- ① 해외 환경건설사업의 발굴·검증 및 사후관리
- ② 해외 환경건설사업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
- ③ 해외 사무소의 상호활용
- ④ 해외 환경건설 시장개척단 파견
- ⑤ 해외시장 정보의 조사
- ⑥ 기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조(사업성과의 활용)

양 기관은 협력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며, 대외 홍보시에는 양 기관의 명의를 병기하여 공동의 성과물임을 밝힌다.

